

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# 『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』

## 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6. 19.

운 영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『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372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2. 제안이유

2024년도 국·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된 사업의 구비 분담금, 법정 필수 경비,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의 편성을 위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(안)의 의결을 요청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2024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 (본예산+간주예산)	증(△)감	증감률(%)
합 계	1,043,686,966	905,401,113	138,285,853	15.27
일반회계	1,013,037,386	881,873,755	131,163,631	14.87
특별회계	30,649,580	23,527,358	7,122,222	30.27
의료급여	686,984	540,000	146,984	27.22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46,835	45,300	1,535	3.39
주 차 장	27,500,448	21,637,145	5,863,303	27.10
건축안전	2,415,313	1,304,913	1,110,400	85.09

#### 4. 추가경정예산(안) 편성내역

가. 일반회계 ----- 131,163,631천원

1) 세입총괄표 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 (본예산+간주예산)	증(△)감	비 고
계	1,013,037,386	881,873,755	131,163,631	
지방세 수입	197,688,180	197,688,180	0	
보통세	196,955,924	196,955,924	0	
지난년도 수입	732,256	732,256	0	
세외수입	109,327,190	108,327,190	1,000,000	
경 상 적 세외수입	71,669,910	71,669,910	0	
임 시 적 세외수입	8,260,218	7,260,218	1,000,000	○ 지역자활센터 이전비
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	29,397,062	29,397,062	0	
지방교부세	13,928,000	13,928,000	0	
조정교부금 등	88,984,519	88,984,519	0	
자 치 구 조정교부금	88,984,519	88,984,519	0	
보 조 금	405,719,609	397,945,866	7,773,743	
국고 보조금	237,496,979	235,287,505	2,209,474	
시·도비 보조금	168,222,630	162,658,361	5,564,269	
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197,389,888	75,000,000	122,389,888	
보전수입 등	197,389,888	75,000,000	122,389,888	○ 순세계잉여금: 111,579,715 ○ '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·시비 사용잔액: 10,810,173

2) 세출예산 편성 내역 ----- 131,163,631천원

● 정책사업비 ----- 47,893,449천원

※ 주요 사업 편성 내역

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	3,376,960 천원
② 자치회관 환경개선 <sup>신</sup> (문래동 공유주방, 신길6동 방음시설)	96,467 천원
③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인테리어	69,600 천원
④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	52,350 천원
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<sup>신</sup>	112,356 천원 (국 73,500) (구 38,856)
⑥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	259,620 천원
⑦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	8,600,000 천원
⑧ 양평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	4,500,000 천원
⑨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<sup>신</sup>	297,000 천원
⑩ 브라이튼 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<sup>신</sup>	58,000 천원
⑪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 등	5,874,000 천원
⑫ 영등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<sup>신</sup>	11,540 천원
⑬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	323,124 천원
⑭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	1,199,778 천원
⑮ 지역자활센터 이전	1,000,000 천원
⑯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	4,000,000 천원
⑰ 부모급여 지원	1,684,439 천원 (국 757,998) (시 648,509) (구 277,932)
⑱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신규 조성 <sup>신</sup>	207,000 천원

⑱ 도림게이트볼장 정비 및 안양천 데크 조명 설치 <sup>신</sup>	213,000 천원
⑳ 태풍대비 공원 등 수목 가지치기 (공원, 학교, 태풍대비)	172,000 천원
㉑ 정원·공원 및 황톳길 문화행사 <sup>신</sup> (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, 공원 문화행사, 황톳길 걷기행사)	77,200 천원
㉒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	200,000 천원
㉓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<sup>신</sup> (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)	579,000 천원
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<sup>신</sup>	850,000 천원
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<sup>신</sup>	800,000 천원
㉖ 보행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<sup>신</sup> (당산중 후문 앞 등 5개 사업)	212,965 천원
㉗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	50,000,000 천원
㉘ 의정활동지원	81,600 천원

● '23년 국·시비 보조금 반환금 ----- 18,630,777천원

● 예비비 ----- 3,996,448천원

▶ 일반예비비: 1,779,000천원

▶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: 2,217,448천원

● 행정운영경비----- 273,957천원

▶ 인건비: 54,766천원

▶ 특근매식비: 219,191천원

● 기금전출금 ----- 60,369,000천원

▶ 청사건립기금 전출금: 50,000,000천원

▶ 통합기금 전출금: 10,369,000천원

나. 특별회계 ----- 7,122,222천원

▣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----- 146,984천원

● 세입

▶ 순세계잉여금: 146,348천원

▶ 보조금 사용잔액: 636천원

● 세출

▶ 재가의료급여 사업: △14,020천원

▶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: 14,020천원

▶ 보조금 반환금: 146,984천원

▣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----- 1,535천원

● 세입

▶ 국고보조금: 1,535천원

● 세출

▶ 국고보조금 반환금: 1,535천원

▣ 주차장 특별회계 ----- 5,863,303천원

● 세입

▶ 순세계잉여금: 5,805,738천원

▶ 보조금 사용잔액: 57,565천원

● 세출

▶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비: 148,750천원

▶ 행정운영경비: 3,932천원

▶ 예탁금: 5,543,349천원

▶ 보조금 반환금: 167,272천원

■ 건축안전 특별회계 ----- 1,110,400천원

● 세입

- ▶ 순세계잉여금: 712,837천원
- ▶ 보조금 사용잔액: 397,563천원

● 세출

- ▶ 건축물 보수보강 및 복구 등 사업비: 662,071천원
- ▶ 행정운영경비: 1,998천원
- ▶ 보조금 반환금: 446,331천원

다.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감률(%)
의회사무국	6,055,441	5,969,002	86,439	1.45 %

5. 검토의견

-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(안)의 일반회계 규모는
  - 기정예산 59억 6,900만원에서 8,600만원 증액된(1.45%) 60억 5,500만원으로, 이는 의정활동비 8,16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함.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,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의 상향 조정 등을 목적으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2023.12.14.)되었으며,
  - 이에 근거하여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한액을 결정·통보하였음.

-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 
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(2024.3.14.)을  
통해 의정활동비를 상향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증액  
편성하였음.

<<의정활동비 지급 기준>>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의정자료 수집 연구비	900,000원	1,200,000원
보조활동비	200,000원	300,000원
합 계	1,100,000원	1,500,000원

○ 검토결과

본 추가경정예산(안)의 주요 골자인 의정활동비 증액은 「지방  
자치법 시행령」이 2023.12.14.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「지방  
자치법 시행령」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법령의  
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,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 
편성된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법

**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**제145조(추가경정예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**제145조(추가경정예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2 지방자치법 시행령

**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**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3. 12. 14.>

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의정비심의회”라 한다)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

- 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: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
-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3. 12. 14.>

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33조제1항제1호 관련)

구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의회의원	월 1,500,000원 이내	월 500,000원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
### 3 지방재정법

**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